

## 2. 생활관 내규

### 1. 지원서류

- ① 입관지원서(별첨1): 1부(신규 및 재입관자)
- ② 건강진단서(보건소 및 병원 발행): 1부(신규 및 재입관자)

### 2. 선발

#### (1) 선발제도

- ① 정기입실 : 매 학년도 3월 기준 입사자 1회 선발(우선기준 적용)
- ② 중간입실 : 결원 발생 시 대기자 순 입실자 선발
- ③ 입실 시 룸메이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생활관 사정에 따라 적용되어 배치할 수 있다.

#### (2) 우선선발 기준

- ① 재학생
- ② 휴학생
- ③ 교직원
- ④ 성락교회 교인

### 3. 입실 제한 사유

- ① 퇴실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
- ② 공동생활의 전염에 우려가 있는 전염병 환자
- ③ 학교생활 및 생활관에 물의를 일으킨 자
- ④ 교회 생활에 물의를 일으킨 자
- ⑤ 직전분기 벌점이 많은 자

### 3. 퇴실

#### (1) 중도 퇴실자 반환제도

- ① 입사일 3일 전까지 : 전액 반환
- ② 입사일 이후 30일 경과 전 : 2/3분기액 반환
- ③ 입사일 30일 이후 ~ 60일 경과 전 : 1/3분기액 반환
- ④ 입사일 60일 이후 : 반환 불가

### 4. 방 배정/호실 사용

- ① 배정된 호실은 계약기간 동안에만 인정한다.
- ② 직전 분기 상점 우수자에게는 호실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다.
- ③ 학교의 특별 행사 및 사정이 있을 경우 입실자의 숙소 사용을 제한, 조정할 수 있다.

### 5. 자치회비

- ① 자치회비는 생활관 자체적으로 소모품 및 생활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용한다.
- ② 자치회비는 사생장이 입실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 및 관리한다.
- ③ 자치회비는 반환이 불가하다.

### 6. 공공생활

#### (1) 시건장치

- ① 도난 방지를 위하여 각 호실의 최종 퇴실자는 시건장치를 확인한다.
- ② 각 호실은 각각 열쇠를 사용하여 입실생 개인이 관리하도록 하고, 퇴실 시 반납한다.  
열쇠는 타인에게 줄 수 없고, 열쇠 분실 시 사생장에게 신고 및 문고리 교체 비용을 지불한다.
- ③ 현관 및 각 층 보안키 번호는 타인과 이성에게 공유할 수 없다.

#### (2) 청소/ 침구관리/ 신발

- ① 생활관의 청결유지를 위해 매일 청소를 실시하며 각 호실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.
- ② 공용공간은 사생장의 지도 아래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한다.
- ③ 본 생활관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거룩한 건물이기에 생활관의 학생은 생활관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, 재산에 대한 손 망실은 행위자가 감정가격대로 배상해야 한다  
(외부인에 의한 손 망실 시 사감에게 즉시 보고).
- ④ 걸레와 청소용구는 청소용구함에 항상 깨끗이 보관해야 하며, 재활용품은 분리 배출하고, 신발은 본인의 신발장에 넣어야 한다.

#### (3) 소지품/의료처치

- ① 개인 소지품은 학업에 필요한 서적, 컴퓨터, 침구, 의류, 세면도구, 스탠드, 선풍기, 휴대폰, 드라 이기, 전기면도기, 고데기는 반입할 수 있다.
- ② ①항외의 반입해야 할 물건이 있을 때는 사생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귀중품 등 물품은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해야 하며, 건강과 질병 등 신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, 사 고 및 분실 시 사생장과 생활관장에게 보고 및 조치한다.
- ④ 사고발생 즉시 사생장 및 사감에게 연락하며, 위급할 경우 병원이나 119, 학생처에 연락한다.

#### (4) 공동이용시설

- ① 공동이용시설에 비치된 집기와 물건은 반드시 지정장소에서만 사용하고, 개인호실로 가져가지 않는다.
- ②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한 후 밸브를 반드시 잠근다.
- ③ 음식 쓰레기는 따로 분리해서 배출한다.
- ④ 세탁시간이 종료되면 세탁물을 즉시 수거한다
- ⑤ 사용한 주방 집기들은 바로 설거지하도록 하고, 사용한 주방시설 및 운동시설은 청결히 유지한다.
- ⑥ 컴퓨터 마지막 사용자는 컴퓨터와 프린터의 전원을 끄고 주변을 정리하고, 타인을 위하여 장시간 사 용하지 않는다.
- ⑦ 형광등이나 기타 물품 교체 시에는 사생장에게 신청하여 교체하도록 한다.

#### (5) 세면장, 화장실, 보일러

- 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복도 소등 후 샤워는 최대한 삼가고, 불가피할 경우 소음에 주의한다.
- ② 물과 세제 등을 최대한 절약한다.
- ③ 보일러는 임의로 조절하지 않는다. 조절이 필요한 경우 사생장에게 문의한다.
- ④ 세면장, 화장실 등은 사용 후에 반드시 소등한다.

#### (6) 고성방가

- ① 면학분위기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큰 소리의 기도나 노래, 악기, 컴퓨터 사용 은 금하며, 큰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해서 타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수면이나 학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.

### 7. 에너지 절약

- ① 각 방 에어컨은 지정된 사용 시간 및 온도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입실자는 에너지를 절약하는데에 힘쓸 의무가 있으며, 공동사용공간의 마지막 퇴실자 및 개인 호실 외출 시에는 에어컨을 포함한 전자기기의 전원을 모두 끈 후 외출한다.

8. 소등

① 소등시간 : 밤 12시 ~ 5시

② 소등시간에는 이동 및 소음이 발생하는 행위는 최대한 절제하고,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한다.

10. 평점

(1) 상점

사생장은 입주자 중 품행이 바르고 성실하며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다음 상점을 부여한다. 단, 임원은 상점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no.	내용	상점
1	부사생장 활동	10 ~ 20점
2	공동이용공간 청소	1 ~ 5점
3	응급 구조 및 간병 등의 봉사를 한 이	1 ~ 5점
4	기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행위	1 ~ 5점

(2) 벌점

① 본 생활관의 규정 및 의무를 위반한 자는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벌점을 부과하고, 그 사항을 계 시판에 기재한다.

② 총 벌점이 기준점을 초과할 경우 학기 중에도 생활관장과 사감의 결정 하에 퇴사를 명한다 단, 자치회와 사감의 요청으로 벌금 부과 혹은 봉사활동 등으로 면제 혹은 감점할 수 있다.

(3) 벌점 기준

no.	내용	벌점
1	생활관내에서 폭행, 절도 등 범법행위	퇴실
2	이성 간 방에 출입하는 행위, 이성의 층에 출입하는 행위	퇴실
3	생활관 내 애완동물 반입 및 사육행위	10점
4	대리입사자 및 제공자, 무단 입사(숙박)자 및 제공자	10점
5	생활관내에서 음주(술병 반입포함), 흡연(호실내 공초 발견포함), 도박행위	10점
6	열쇠 양도 및 도어락 번호를 공유하는 행위	10점
7	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을 생활관 내부로 대동하는 행위	5점
8	생활관내 인화물질, 위험물을 포함한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 및 사용하는 행위	5점
9	생활관 정문이 아닌 비상문 및 창문을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	5점
10	허가 없이 방을 변경하는 행위	5점
11	생활관내의 공공이용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방안 시설 및 기물 파손행위	4점
12	생활관 내외에서 소란 또는 소등을 일으키는 행위	3~5점
13	점검 시 비협조적인 태도	2점
14	낙서, 허가받지 않는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 무단전시 및 배포행위	2점
15	생활관의 퇴사 일정을 지키지 않은 행위	2점
16	그 밖에 관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	1점~퇴사

## 11. RA(사생장, Resident assistant)

### (1)RA 선출

- ① 임원은 입실자 가운데 RA를 지원한 자 중, 생활관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발한다.
- ②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도 사퇴할 경우에는 다시 선출하여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한다.
- ③ 생활관 내 RAA(부사생장)를 두어 RA의 역할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.

### (2)RA 혜택

- ① RA는 임기 중 생활관비를 면제 받는다.
- ② RAA는 활동 내용에 따라 상점을 부여받는다.

### (3)RA의 역할

- ① 생활관 전반의 제반 규칙 및 내규 사항을 입실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.
  - 보안 관리
  - 청소 및 시설관리
  - 공동공간 관리
  - 냉난방기 온도 조절 등
- ② RA는 기준에 따라 상,벌점을 부여할 수 있다.
- ③ 자치회비를 각출하여 관리한다.
- ④ 특별 단기 입실자가 있을 시 이불 대여 및 세탁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.